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2024. 12. 31.



목차

| 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법 제1조, 제3조) 1 |
|--|
| ▶ 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의 "개인정보" ······2 |
|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제공 7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법 제15조) ······ 9 |
| ②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43 |
| ③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법 제17조)·············· 48 |
| ④ 추가적 이용 및 제공(법 제15조③, 제17조④) ·········· 57 |
| 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법 제18조)························ 61 |
| ⑥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9조) 74 |
| 3.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76 |
| 4.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82 |
| 5. 특별한 보호 95 |
| 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95 |
| ②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100 |
| ③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107 |
| ④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법 제24조의2) 112 |
| 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6조) ···· 116 |
|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양식)135 |
| 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제27조) ···· 138 |
| 7. 868 - 89 - 9E 71E 8 - 9E 71E (6 71E 1 - 1) 1 1 1 3 0 |
| 8. 기타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의 조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과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의 주요 방향은,

- ①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결례, 판례, 현장 사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②법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해설서는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 영역별 안내서는 전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처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하고,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내서 (안)를 마련하였습니다.
- ③안전조치 등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전문 영역은 별도 안내서를 공개(개인 정보 포털, 위원회 누리집)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체계



- ㅇ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o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 목적 명확성 / 최소 수집
-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보장
- 0 안전한 관리
- 투명성 / 권리보장
- O 사생활 친해 취소하
- 이익명 /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수집·이용 (§15)

- ① 동의 ② 법률
- ③ 공공기관의 법령 등 업무
- ④ 계약 ⑤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 ⑥ 정당한 이익 ② 공공의 안전 등

처리 위탁 (§26)

- 0 문서로 위탁
 - o 처리방침에 업무 내용·수탁자 공개
- ㅇ 수탁자 감독 의무
- - 위탁받은 업무 외 이용·제공 금지
 - 재위탁시 위탁자 동의

제3자

목적 내 제공 (§17)

- ① 동의
- ② 법률
- ③ 공공기관의 법령 등 업무
- ④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 ⑤ 정당한 이익
- ⑥ 공공의 안전 등

영업양도 (§27)

- o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 → 미리 이전 사실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제공 가능





<추가적 이용·제공(영 §14의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고려사항 2. 예측 가능성
 - 3.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 4. 안전조치
- 지속적 발생하는 경우 판단 기준을 조치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o CPO의 점검의무

목적 외 이용·제공 (§18)

(전제조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① 별도 동의
- ② 다른 법률
- ③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 ④ 공공의 안전 등

공공기관

- 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② 조약 등 이행
- ③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 ④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⑤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제공받은 자의 의무 (§19)

- (원칙)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ㅇ (예외) ① 별도 동의
 - ② 다른 법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

| | 아동의 개인정보(§22의2) | 민감정보(§23) | 고유식별정보(§24) |
|--------|-------------------------------|---|---|
| ① 대상 | ○ 14세 미만 아동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② 처리요건 | ○ 법정대리인 동의 ○ 알기 쉬운 문구 사용 등 | ㅇ 별도 동의 ㅇ 법령 근거 | o 별도 동의 o 법령 근거 |

주민등록번호 (§2492)



- o 법률/시행령 근거
- o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 이내부 관리계획
- ㅇ 접근 권한 제한
- 0 암호화
- ㅇ 악성프로그램 점검
- ㅇ 접근 통제 ㅇ 접속 기록 보관
- 물리적 조치 등
- 8
- 파기 (§21)
- 목적 달성, 기간 경과 등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이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분리 저장·관리



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

①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정보주체가 보장받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상 인격권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다양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중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결정).

- < 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의 "개인정보" > -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 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하고,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① 정보 자체로 개인정보인 경우 (가목)

그 자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사람을 고유하게 알아볼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여한 정보 또는 얼굴·홍채·지문 과 같은 생체정보 등은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어서 그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은 사람에게 부여한 정보이지만 동명이인이 많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성명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상황도 있게 된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DB를 통해 스스로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와 결합 없이도 해당 DB 자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정보인 경우 (나목)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입수가능한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처리하는 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리하는 자'가 해당 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입수한 정보를 당초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당초 정보와 쉽게 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상황(circumstance)과 정보를 처리하는 맥락(context)에 따라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입수 가능성"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입수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설령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다른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절취하여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가능성이 입수가능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자동차등록번호와 같이 장치·기기 등에 부여된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체로 서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해당 정 보를 얼마나 쉽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해 당 장치·기기에 대한 정보는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이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일 반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해당 장치·기기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와 같이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해 쉽게 다른 정보를 입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 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공공기관이 추가로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소유자 정보, 재산상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정보 등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쉽게 각각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결합된 정보에는 자동차 소유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나목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누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나목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개별 사건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게 자동차등록번호와 같은 개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A기업과 제공받는 B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A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제공받는 B기업 입장에서는 B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A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는 B기업 입장에서 제공받는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한 적법요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을 갖춰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A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적법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A기업이 B기업과의 계약 등을 통해 B기업으로부터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C기업이 해킹을 당해 해커에게 회원관리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C기업 입장에서는 회원 개인정보 DB 중 일부인 회원관리번호가 유출된 것이므로 회원관리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처리하는 자', 즉 C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C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커를 기준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해커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해당 정보를 유출한 자로서 정보통신 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고 C기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절취한 것일 뿐, C기업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②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 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 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의와 역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적 공백을 막아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제3조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개인정보처리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열거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고)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였고(법 제5조제5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법 제6조제2항) 다른 법령 등의제·개정 및 적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해석원칙이 된다.

법률

참고 경품 응모권 고지사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 자 제공 동의' 등 사항이 경품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u>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항)과「개인정보 보호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u>

2. 구체적인 내용

① 처리 목적 명확화 및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집 원칙(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 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 목적 내 적합한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원칙(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다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 원칙(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원칙(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처리 원칙(제6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기 익명·가명 처리의 원칙(제7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책임준수 및 신뢰확보 노력 원칙(제8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 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제공

< 참고 :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편 >

- ① (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요건 개선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법 제15조 적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종전 법 제39조의3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 왔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법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前 : 필수동의

- (온라인 특례) 필수동의
- (공공•오프라인) 계약 요건 엄격
 - ※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도 <u>"불가피하게"</u> 필요한 때에만 수집·이용 가능

개정 後 : 적법처리 원칙

- (온라인 특례 삭제) <mark>필수동의 폐지</mark>
- → · (공공·오프라인) 계약 요건에서 "불가피하게" 삭제
 - → <u>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u>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요건(제15조제1항) 변경 :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적법하게 동의요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개정(2024.9.15.시행):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신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제4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를 삭제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와 정보주체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요건 중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우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7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 규정이 적용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의사유에 추가하여 규정)

② (법 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 요건 개선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 종전의 법 제15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외에 제6호와 제7호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경우(제7호)에는 그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요건 개선

• (제2항 단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요건 적용)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만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던 제18조제2항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다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은 유지

- (제2항 제3호: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요건 개선) 종전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와 같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항 제10호 : 공공의 안전 등 요건 개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에도 목적 외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 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조치는 이행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 였으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해야 하는 개별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공개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법 제15조)

1. 개요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표준지침 제6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등과같은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않아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생성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예시

- 명함을 받음으로써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본인 이외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인터넷 검색이나 인명부, 전화번호부, 잡지, 신문기사 등 공개된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정보주체 본인이나 제3자 또는 그 밖의 출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적법요건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적법요건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지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적법요건 중 하나를 갖추도록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적법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참고 하나 이상의 적법요건을 갖춘 사례

-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여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제22조의 적법 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의료법에 따라 수집하여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의료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 한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u>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u>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적법근거를 채택할 것인지 사전 평가한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처리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어떤 적법근거에 따라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제22조제3항)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15①) 적법근거 검토 방향]

①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강조되어 정보주체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 ▶ 다른 적법근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②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개별 법령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③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률 및 하위법령, 위임 고시,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 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④ (제4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제5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명백히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의 골든타임 보장)
- ⑥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의 형량이 필요한 경우

⑦ (제7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감염병 확산, 재난 등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7. 생략)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적법한 동의"의 의미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다. 개인정보처리자 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일 정보 주체가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지ㆍ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자유로운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동의가 될 수 없다.
- 즉,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았거나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약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동의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호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정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2조는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7조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후라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여 형식적・강제적 동의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의 요건

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476판결 [행정소송]

동의가 명시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실 및 그 동의를 얻기 위하여 미리 고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지사항(이하, '법정 고지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u>이용자에게 인식 가능성만을 부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식·확인하게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한것이라고 볼 수있어야 한다.</u> 나아가, 그러한 이용자의 동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동의라고 보려면 '미리'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16. 6. 28.선고 2014두2638판결 [행정소송]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하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통틀어 '법정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동의를 받을 때 법정 고지사항1)(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2항).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을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알려도된다. 이 경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릴 수 없는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법에서 규정한 것은 정보주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목적, 개인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투명하게 알려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¹⁾ 법정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와는 별도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23 년 법 개정을 통해 법 제15조 제1항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통합 정비하였다. 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의 경우는 종전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였으나 법 제76조의 과태료 특례 규정을 확대하여 동일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다.

3. "동의"와 다른 적법처리 근거와의 관계

-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강압이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한하는 조건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동의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동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처리근거 중 하나로 규정된 동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른 적법처리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등 다 른 적법근거를 토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도 수행하려는 업무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없다. (제2항, 제3항)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계약 이행을 근거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 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2항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체,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법률'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하위법령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은 포괄위임금 지의 원칙에 따르며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에서 공공기관 등이 '다른 기관·기업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른 기관·기업 등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 별적으로 확인한 후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다른 기관・기업 등은 요구의 근거 법률에서 요구받은 기관・기업 등이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다'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등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에 비추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등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등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사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u>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u>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 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 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u>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u>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정이 없</u>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u>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u>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u>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u> 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u>다만</u>,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u>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u> 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림자원법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②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u> 제1항에 따른 <u>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u>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u>특별한 사정이</u>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u>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u>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u>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 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 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⑤ <u>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u>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u>,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돌봄통합지원법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제6호·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u>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u>자료 제공 및 관계</u>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u>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 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2.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3.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5.「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경찰서
- 7. 「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의 소방대
- 7의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7의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7의4.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u>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u>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u> 따라야 한다.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표준지침 제6 조 제2항 제3호)
- '법령상 의무'는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법령상 의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보유기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함상품 리콜의무(「소비자기본법」),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 확인 또는 연령확인 의무(「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법령상 의무

- · 소비자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결함상품 리콜의무 이행
 - ※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인적사항 게시 등
 - ※ **제13조(강사 등)**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
 -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6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제9조 또는「법인세법」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행위
 -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를 위해 실명을 확인하는 행위
 -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의 상대방 연령확인,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종업원 고용 및 출입자 확인 시의 연령확인
 - ※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 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판례/심결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① <u>주택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 등 주택조합</u>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 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A,B,C)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합원 D의 요청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를 복사하여 조합원 D에게 제공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104523판결)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 숫자 확인, 허위 조합원 여부 확인, 조합원 단합(임시총회 소집요구)'을 목적으로 조합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 복사를 요청하였고, 조합이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 공개 예정을 통지한 것에 대해 원고 조합원이 정보공개금지 청구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주택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합원의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이용(열람·복사)할 수 있음을 인정
- ② <u>피고가 국세청 및 각 세무서에 구 신용정보법(2015. 3. 11.) 제2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체납 자료를 요청</u>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580409판결)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사단법인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 및 각 세무서 체납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상기 법률에 따라 이용(체납정보의 수신 및 집중)할 수 있음을 인정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96조가 주주의 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96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실질주주명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 2004199,2015나2004205(병합)판결)
- ☞ 경제전문단체인 원고가 건설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실질주주 명부에 대해 상법 제396조의 주주 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 도록 허용
-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영상,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위 2017.7.10. 제 2017-13-100호 심의·의결)
- ☞ 시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단이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
- '법령 등'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 '조례'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 법률의 위임 범위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는 정부조직법이나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법인의 경우 소관 업무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3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여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적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법한 조례규정은 '법령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법령 등'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 등'은 적법한 법령 등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검 중 대상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9조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64 판결).

²⁾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두 5927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

- '불가피한 경우'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 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소관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제2호와 제3호는 제정의 취지가 양 요건 간 서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인용 예시

- · 인사혁신처가 「정부조직법」제22조의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인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 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 · 대학교 행정실이 「고등교육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학교 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잘못된 주차 행위를 한 차주의 휴대전화번호를 교내 재학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교내 주차민원 해결에 이용하는 경우(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22면)
- ·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안면 이미지를 출입국 관리 AI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07-046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2023.8.6.))

판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① 개인정보보호법 <u>제15조 제1항 제3호</u>,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교도관은 교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권한이 있고,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소속 교도관들이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구합618판결)
- ☞ 교도소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결취소 청구 건에서 교도관이 서신수발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교도관이 징계조사에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교도관의 행위가 교정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한 판례임

-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했던 감사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진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합108572판결)
- © 연구원인 자가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거부하여 직위해제를 당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인지 판단함에 있어 연구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설시하였음

-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u>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u>하거나 <u>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u>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제1호)를 적법근거로 규정하면서 계약 이행 등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수반되어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불가피하게" 삭제 (2023년 법 개정)

· 종전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를 삭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계약"의 의미

- "계약"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의미한다. 계약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계약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두계약 등도 모두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하 "합의"라 한다)로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당사자 상호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합의"를 통해 성립한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하므로(법 제22조 제3항 후단), "재화 또는 서비스제공 및 이용의 범위"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계약에서 합의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 이용약관 외에 정보주체가 서비스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고지한 내용, 사전에 공개한 개인 정보처리방침 등에 기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 야 한다.
- 계약의 범위에는 "약관"도 포함될 수 있으나, 약관에 포함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약관도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 다만,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고, 약관의 개정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계약의 이행 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약관의 내용 중 서비스의 범위 변경으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상품 결제, 배송, 반품 및 환불 등의 내용을 합의한 경우

사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고 다른 일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
- ·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약관에 포함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등 원시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상호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약관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약관에 포함된 계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 이용약관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이용약관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예: 홈택스, 정부24 등)에는 제3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리면 된다. 다만, 제3호만으로는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모두를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호의 계약 이행을 근거로 하거나,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계약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해야 한다.

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상품 주문을 받아 결제-배송-AS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 상담을 위해 전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회의 참석 전문가 등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 계좌정보,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수당 지급에 이용 하는 경우
- · 백화점에서 상품구매 및 배송서비스를 위해 결제정보(카드정보 등)와 배송정보(주소, 연락처)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오배송 등 방지를 위해 이름, 이메일, 집전화번호, 배송희망시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배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세대주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등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아파트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애서 거주자수, 반려견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맞춤형 추천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경우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검색기록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안위험, 악용사례(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등) 등 감지 및 예방을 위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인터넷 쇼핑몰이 계약 이행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직접 상담에 필요한 구매정보, 불편사항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상태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요청"은 정보주체가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요청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별도의 구체적인 요청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보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제1호), 부정가입 시도 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제6호)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보유한 후 파기할 수 있다.

사례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요청한 정보주체와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 이름, 연락처, 생성 아이디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 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회사가 취업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4. 판단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으로 제공하고자 한 서비스의 특성, 계약의 근거 및 핵심 내용에 비추어 그 계약에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도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는 ① 정보 주체와의 계약이 성립하여 유효한 것인지,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③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근거로 포함한 취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된다 는 점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만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근거로 수집·이용할 필요가 있고,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동의를 요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와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적법근거로 하기 보다는 제2호 또는 제3호를 적법근거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우월한 영역이 아닌 정보주체의 계약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계약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있다.

["계약" 관련 적법근거 판단시 고려사항]

| 구 분 | 주요 고려사항 |
|------------------------|--|
| ① "계약" 의 성립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상호 명백한 의사 표시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함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등 무효인 계약은 해당하지 않음 |
| ②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 ·정보주체가 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함 |
| ③ 개인정보의 "필요성" | ·서비스의 특성,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해야 함 |

[※] 민감정보(§23), 고유식별정보(§24), 주민등록번호(§24의2) 처리의 적법근거에는 "계약 이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 유의

5.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과의 관계

-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 보를 수집해야 한다.
- 계약을 통해 정보주체와 합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직접적·객관적으로 필요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 에 대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고지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부담(법 제16조 제1항 후단)하므로 적법요건에 대한 평가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요건 중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하였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법 제15조 제1항 제5호)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 제18조 제2항 제3호)할 수 있게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 사례: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렌트서비스를 이용한 법죄용의자의 주소 정 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사례('21.2월)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단한 후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릴 필요가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4조)
 -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약과의 형량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상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
 - 생명·신체·재산 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해야 한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시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급박 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른 적법요건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법 제16조)

사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

- 조난 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실종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 집 • 이용하는 경우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 의료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가 발생하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 고 고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시설기관에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경찰이 아동 대상 범죄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렌터카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인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⑥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u> <u>우선</u>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의의

-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의 다른 가치인 알 권리, 표현의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 등과의 조화 속에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의미를 가지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이 최소화되어 있는 일정 조건 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법률요건

가. 목적의 정당성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정당해야 하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상 이익,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 등 다양한 층위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사례로는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조사·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영업상 이익, 사회적 이익 등도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익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이익이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자와 관련성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처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 구체 화되며, 목적 명확화 원칙(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 따라서, 정당한 이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목적(예: 향후 기업 영리행위 추구 등)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판례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로앤비 판결")

이 사건 개인정보와 같이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u>알</u> 권리'가 정보처리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수용자에게 인정됨은 물론, 이러한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u>정보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u>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영업의 자유</u>가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므로,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로앤비가 집적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u>사회적수요</u>가 존재한다면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u>경제적 효율성</u>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나. 처리의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합리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는 있는지, 혹은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형량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침해 또는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 조) 등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영업상 이익, 사회적 이익 등으로 넓게 인정되는 것처럼 정보주체의 '권리'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자유(헌법 제17조)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한다. 개인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우선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명백히 우선하도록 정보주체 권리침해 위험을 예방·경감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점이 좀 더 명백해 질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 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 형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력이 상실되는지,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야기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이나 다른 이익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 우선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이 아닌 정부 등 공공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 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상 규정 등 다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익형량 시 고려요소]

| [이익용당 시 고덕포조] | | | | |
|--|--|--|--|--|
| 구 분 | 주요 내용 | | | |
| ①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민감한 정도 |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 우선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별도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필요 '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의 권리가우선할 가능성이 높아짐 | | | |
| ②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 ·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 및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수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 때 예측가능성은 각 정보주체마다 달리 판단되는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보편적인 통상의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외부 공개용 문서에 이러한 합리적 기대에 대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다면 정보주체의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 | |
| ③ 개인정보의 ·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하는 것이리 처리 방식 보주체의 권리가 우선할 가능성이 높음 | | | | |
| ④ 정보주체의 ·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청구 등) 행사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을 절 권리 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짐 | | | | |
| ⑤ 개인정보처리지의 지위 | ·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고용관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감시나 통제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다 엄격한 이익형량 기준이 적용 | | | |

3. 계약 이행 등 적법요건과의 관계

- 계약 체결 및 이행 규정(제4호)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규정(제6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및 이행 규정 이 단순히 '필요한 경우'를 요구하는데 반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의 구체적 이익형량이 필요하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의 개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이 해지, 해제 등으로 파기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계약 체결 및 이행 규정에 근거할 수 없고 (동의 등 다른 규정에 근거할 수 없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수집, 이 용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수집 이용 가능한 경우

- 사업자가 요금정산·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 과금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생성· 관리하는 경우
-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고객의 물품 주문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요금을 산출하고 과금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게 되며,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집 가능
- 사업자가 고객과의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요금 정산자료, 고객의 민원제기 내용 및 대응자료 등을 수 집·관리하는 경우
- 이미 해결된 민원인데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기존의 민원제기 내역 및 대처기록 등의 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경우, 요금정산 및 과금에 대한 불만 발생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생성·관리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의 이익보다 큰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능
-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을 위해서 회사 출입구(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근로자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낮은 반면,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의 효과가 크므로 필요성도 있고 정당 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한 경우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인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설치하여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이용한 사안에서 ①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② 본건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 하며 ③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④ 본건 영상정보의 촬영 대상,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본건 영상정보의 위와 같은 촬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2-22호)

- 부리과금 해지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 경우
- 회사(피신청인)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분리과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퇴사한 직원(신청인)이 '분리과금'을 해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회사가 이를 해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직원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 사안에서 ①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분리과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청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퇴사 이후에는 '분리과금' 혜택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② 피신청인 입장에서 퇴사한 신청인에 대한 '분리과금'을 피신청인이 해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이동전화 요금 중 일부를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분리과금'의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회선의 이동전화 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변경된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임 (2016년 개인정보 부쟁조정 사례집, 55-57면)
-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사업주가 상대방인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 법원은 ① 과거 근무경력은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에 있어 주요한 자료이므로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② 해당 개인정보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었으며, ③ 법원에 제출된 정보는 제3자가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정보주체(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20179 판결)
- 4일간 미출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교 안(비공개된 장소) 교문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의 영상을 사회복무요원의 동의 없이 열람한 사안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을 통해 특수아동의 권익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피신청인의 이 사건 CCTV 열람행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같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이 복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CCTV 열람행위가 신청인이 2차에 걸친 소명요청에 불응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복무관리 감독이라는 정당한 이익 달성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날에 한해 실시되어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였음 (2023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46-48면)
- 은행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사안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로 보안카드를 교부한 것은 거래 과정에서 약정된 의무를 초과하여 이행된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해당 사실을 신의칙에 따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휴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한 것은 사회통념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88-89면)
-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조건(지속적인 운행 입증은 보험사가 제시)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최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동의 없이 발급받은 사안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①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신청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신청인의 통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관계 유지여부 판단에 이용하는 것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권과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해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고, ② 보험사가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이용한 것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③ 보험사의 정당한 이익은 신청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④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통지의무 위반 확인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합리적인 범위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70-72면)
-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폭언·폭행 위협이 지속되어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하는 경우
- 폭언·폭행의 위협에 대한 자제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다면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을 할 수 있음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1면)

사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수집 ·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경우
- 대법원은 다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직·간접적인 근로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 당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회사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대학 학과장인 피고인이 대자보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학생회 간부인 피고소인을 고소하면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
- 1심 법원은 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비상연락망 구축)과는 달리 피해자를 고소하는 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이외에, 피해자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피해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정 2030판결)
- 2심 법원은 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②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고소의 원인이 된 피해자가 작성한 대자보를 통하여 공개된 피해자의 정보, 즉 피해자가 모 대학교의 레크리이션학과 학생회장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할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학과장으로서의 업무상 수집·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서

울북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202 판결)

- 수소 전기차·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가 사무실 내에 시설 안전, 사내 보안사고 예방목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CCTV 1대를 설치·운영한 사안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업 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공간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지속적으로(24시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사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순찰업무를 통한 범죄예방은 시흥경찰서의 '정당한 이익'에는 해당하나, 신속한 현장 파악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순찰이므로 실시간 영상정보 수집·이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죄와 관련 없는 영상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1-004호)
- 의료인과 환자 등 허가된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병원 진료실에서 동의 없이 CCTV 촬영한 사안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하고 투명한 진료와 시설안전 확보,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이익이 환자인 신청인 등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2018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35-38면)
-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야간에는 경비원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되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한 사안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 내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정당한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 근무자의 취침공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할 필요까지는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사무실 전체를 모두 촬영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인 경비원들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거나 사생활이나 다른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201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01-106면)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종전 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 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 규정이 적용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의 사유에 추가)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각종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과 천재지변·긴 급재난 등으로부터 이재민을 구조·구호하기 위한 활동은 '공공의 안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그 이외에도 '공공의 안녕' 즉, '법질서, 개인적 법익, 또는 국가와 그 시설의 존속 및 기능이 아무런 장해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의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 다만,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긴급 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 긴급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긴급한 경우를 '급박성'이라 하면서 그 의미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 9937 판결)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 |
|---|
|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
| 따라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명시적인 동의 육 |
| 칙을 준수해야 한다. |

| 개인정보 | L처리자는 | 이 법어 |] 따른 기 | 내인정보 | 처리에 다 | 개하여 . | 정보주체료 | 일부터 동 | -의를 | 받 |
|-------|-------|------|--------|-------|-----------|-------|-------|-------|------|---|
| 을 때에 | 는 각각의 | 동의사 | 항을 구분 | 분하여 정 |) 보주체기 | - 이를 | 명확하게 | 인지할 | 수 있 | 도 |
| 록 알리. | 고 동의를 | 받아야 | 한다. 특 | -히 아래 | 경우에는 | : 동의 | 사항을 구 | 7분하여 | 각각 - | 동 |
| 의를 받 | 아야 한다 | | | | | | | | | |

<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근거 :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전에도 판례를 통해 적용해 온 조건이나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신설을 통해 적법한 동의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

- 1.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 자체의 이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지 않는 일부 부가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 □ 종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왔으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특히,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이 있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를 고려한 후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특히, 중개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이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한 경우 |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1호) |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 |
|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이하의 벌금 | | |
| (제17조제1항 위반) | (제71조제1호) | | |
|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 |
|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이하의 벌금 | | |
| (제18조제1항・제2항 위반) | (제71조제2호) | | |

②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1. 개요

-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을 경우 해 킹 또는 직원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러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법령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법률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요 내용

1 최소 수집 원칙

1. 의미

○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있으면 해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의무 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은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 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집'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 제16조 제1항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사 감사실이 보안업체로부터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출입기록을 제공받아 의결례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XX 감사실은 근무실적 하위 30% 전 현직 근무자의 복무 점검을 위해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2년간 출입기록 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XX 감사실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 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것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호법 제16 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법은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XX 감사실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인 보안업체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하고 자 하는 것이므로, '수집' 과정에 적용되는 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2022. 12. 19.자 제2022-120-047호 심의·의결)

2.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특성, 목적, 시장 환경 및 거래 환경,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 려하여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성격도 존재한다. 서비스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정 하고,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와의 계약(동의)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에 기재된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와 정보주체 간의 계약서 내지 이용약관, 서비스 관련 안내, 거래 환경, 대가 관 계 유무, 시장 상황의 변화, 기술 발전 상황 등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참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결혼 여부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 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임직원 채용에 있어서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 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 가족관계, 결혼 여부,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관리 업무의 경우, 동 호수와 같이 입주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차량번호 등 등록할 차량에 관한 정보, 주차관리 시 필요한 긴급 연락처는 차량관리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 나, 아파트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병원에서 온라인 진료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임상실험 등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대기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동행인 수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 거주지역, 동행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입학 요건과 관계없는 보호자의 고유식별정보, 직업, 학력 및 종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3. 입증책임의 부담

○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즉 개인정보처리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최소수집원칙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② 동의 거부권의 고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필수정보 외의 선택적으로 수집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 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수집 동의를 요하는 선택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강요된 동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 선택정보의 수 집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 서비스 제공에는 회원 가입도 포함되므로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 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유료 서비스는 물론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 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개인정보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특성, 기능 및 내용, 거래 구조 및 거래 환경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구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추후 입증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필수정보 이외의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16조 제3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

6. 질의 응답

- □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란?
- □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계약의 성립과 상품 배송 및 대금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통장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는지?
-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③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 (법 제17조)

1. 개요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과 구분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 (2023년 법 개정)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 요건 개선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 종전의 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외에 제6호와 제7호를 추가하였다.
-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7호)에는 그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법령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 르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주요 내용

시

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 개인정보가 담 긴 출력물・책자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
-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 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 15조 제1항 제2호(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제3호(공공기관 소관업무수행) 및 제5호(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이익), 제7호(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법률 개정으로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와 제7호(공공의 안전과 안녕)가 추가되었다. 다만,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및 체결)에 근거하여서는 제공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 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란 제공받는 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의미하므로, 금융기 관, 정부기관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제공받는 자를 알기 어렵도록 포괄적으로 알려서는 아니 되며, 제공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알리고 제공되는 목적, 항목, 기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별로 그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각각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는 자의 연락처도 함께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특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및 제3자의 유형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제공받는 제3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등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관련 위반 사례

- · XX서점은 영업의 특성상 제휴업체가 빈번히 변경된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신청서 상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휴업체명) 및 개인정보의 제공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여러 제휴업체와 제공·공유함
- · XX마트는 "개장 기념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정보가 제휴 생명보험사에 제공되어 「휴일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휴업체에 제공함
- · XX 통신사는 요금이 연체된 고객의 채권 추심을 위해 추심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아닌 고객 가족 연락처를 동의를 받지 않고 함께 제공함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법률의 특별한 규정

-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시·군·구의 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교부(「공직선거법」 제46 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제 공(「보험업법」 제176조)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 · 선거사무장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 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예에 속한다.
-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법령상 의무 준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해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인허가사무, 신고수리, 복지업무,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실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 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내부고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이나 피민원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법률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것'도 요구되었으나, 2023. 3. 14. 법률 개정으로 해당 요건은 삭제되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요건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 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하다.
 -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급박한 이익의 예시

- · 경찰관서 등이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소방기관 등에 알리는 경우
- · 복지센터 등이 실종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관서 등에 알리는 경우
- ·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가 발생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 시키고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 기관에 알리는 경우
-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 2023. 3. 14.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있게 되었다.
 -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023.3.14.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제공의 예시로는 각종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감염원 추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천재지변・긴급재난 등으로부터 이재민 구조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과 제공기준의 비교

| 기준 | 수집·이용(제 15 조) | 제공(제 17 조)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제공 가능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가능 |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가능 |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가능 |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능 |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능 |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가능 |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인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경우 제공의 근거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할 경우 법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법 제26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한편,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성격은 어떤 사업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인 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3자 제공과 위탁에 따른 요구사항 준수 여부가 법적 성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보주체의 동의 등 별도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전의 법적 성격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전의 법적 성격이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1호) | | |
|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호) | | |

6. 질의 응답

- □ 같은 그룹 내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의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는지?
- ⇒ 제3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함
- ⇒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4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1. 개요

-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적법 하게 수집한 경우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법령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 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 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 행 령

3. 판단시 고려사항

1. 구체적 고려사항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의 목적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추가적 이용 및 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개인사업자와 정보주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 · 중개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안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해야만 배송 등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 이 경우 ① 정보주체는 중개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³⁾할 수 있다는 점, ②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③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점, ④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예: 택시 중개서비스에서의 안심번호)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이 경우 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통해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 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 다만,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과 제공받는 자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23.12월)

한데 코로나19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제공한 사안

·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수집목적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 연계'이고 적시된 개인정보 제공기관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무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목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제

³⁾ 중개서비스 사업자가 중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병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공하면서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고단5309 판결)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이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고,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하다.
-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중개(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병행할 경우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유형이 특정되어 안내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이높아질 수 있다.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제 공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침해 내용이 사회통념 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안전조치의 내용은 가명처리나 암호화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는 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 * 안전성 확보조치의 예시로는 개인정보의 일부 마스킹 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의 최소화 조치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민감하거나 정보주 체의 이익 침해 정도가 높은 경우 강화된 안전성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2. 조치사항 : 공개 및 점검

-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 종전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해야 하는 개별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 하여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 정보주체가 택시 중개서비스 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시 중개서비스 앱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택시 호출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 중개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제3자인 상품 판매자에게 배송 등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통신판매중개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결제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 확인 및 배송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입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 중인 정보주체의 가입자식별정보, 결제일시 · 결제금액 등 결제내역정보를 결제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사업자가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입사 지원하는 기업에 정보주체의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례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 · 화장품을 판매한 소매점이 소비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화장품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의 리콜 실시를 위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고객이 가게에서 계산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고객이 실수로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게주인이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 · 기업·기관 등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법 제18조)

1. 개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2023년 법 개정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요건 개선 >

-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요건 적용 : 제18조제2항 단서
-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만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던 제18 조제2항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 다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은 유지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 개선 : 제18조제2항 제3호・제10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와 같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렌터카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대상 범죄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조를 위해 렌터카 서비스 이용자인 범죄자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 · 재난, 실종 등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CCTV 영상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경우
- 또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에도 목적 외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조치는 이행하여야 한다.

사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의무는 모두 적용됨

2. 법령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 삭제

법

시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 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3. 주요 내용

고

시

①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제18조 제1항)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이 ① 이용자들의 의사와 합치하는지, ②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③ 이용자들이 불측의 손해가 입게 될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0912 판결)

판례 목적 외 이용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가)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불폰을 충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충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여 충전한 후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가입한 선불폰에 충전을 할 것인지 여부, 즉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은 그 이용자에게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그 충전이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불 폰 이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이동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겠으나, 그밖에도 각자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단기간만 사용하고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 모든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서비스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이용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어 다시 충전하면 계속 하여 선불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이는 원고가 예로 들고 있는 노래연습장 이용자에 대한 무료 추가 이용시간 제공 등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부활충전의 경우 그 대상이 된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충전사실을 바로 알고 서비스 계속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다) 또한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임의로 충전한 경우, 이용자들이 그 충전사실을 확인하여 선불폰을 실제로 추가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지만, 더 이상 선불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사로 충전금액이 소진된 후 새로 충전을 하지 않고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두 3091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로 확정).

사례 목적 외 이용 사례

-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자료를 발송한 경우
-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의 홍보에 이용
-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않고 자사의 할 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 하는 행위

사례 목적 외 제공 사례

-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 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②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1. 공통 사항

- 제18조제2항 각 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483 결정 참고) 목적 외로 제공받는 제3자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보호위원회 결정 2019. 1. 28. 제2019-02-014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보호위원회 결정 2018. 11. 12. 제2018-23-268호)

2. 예외 사유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ㆍ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ㆍ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목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 인의 문서제출의무(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 장의 자료제출 요구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보고 요구(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기관 장의 처리 민원 결과에 대한 업무 반영 규정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렌터카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대상 범죄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조를 위해 렌터카 서비스 이용자인 범죄자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 · 재난, 실종 등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CCTV 영상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경우
- · 동사무소나 경찰관서가 시급히 수술 등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될 수 있으나,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하에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된다.

사례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 · 지자체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자동차 취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영방송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 내 CCTV 영상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례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지자체 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실명이 포함된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 구하는 경우

의결례 A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B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 적극 해석한 사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취학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나, 그럼에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시가 관내 체류하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하는 것은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3. 27.자 제2024-106-008호 심의·의결)

의결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 민자도로사업자는「유료도로법」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고,「재난안전법」제3조제3호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서 자신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에서의 재난 예비·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0. 11.자 제2023-114-030호 심의·의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는데, 그 명칭이 조약이든, 조약 이외의 "협약, 협정, 규약, 선언, 의정서"이든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면 조약이되다.
-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시간· 장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조약의 체결 시에는 조약의 체결 당 사국이 조약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조약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 되거나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정정요구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예방과 처단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
- ·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정보주체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의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다만,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도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법 제18조제2항제7호는 공공기관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 ·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주로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소제기 후 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도 허용된다.

사례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피내사자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 · 내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으로서 수사 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07-15호).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 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제195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한다(제196조).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되는데, 수사 개시의 원인인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기사, 소문 등이 있다.
 - 수사는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임의수사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 소송법」 제199조제2항),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제241조 이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조사(「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제1문), 감정·통 역·번역의 위촉(「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임의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 자유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 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임의수사를 위해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하거나 공공기관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를 더욱 엄격히 해석함으로 써 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두고 있으며(「신용정보법」제32조제6항제5호),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급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에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36시간 안에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신용정보법」제32조제6항제6호).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 법원은 판결, 화해, 조정 등 재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정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 형, 보호·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

- 법 개정으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법 제58조 제1항제3호에서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 규정을 적용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의무는 모두 적용됨

의결례 A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인 A시가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발령 시 재난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0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침수 위험 지역 거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등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 10호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시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A시 B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 24.자 제2024-102-002호 심의·의결)

③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제18조 제3항)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②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알려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 공개 및 대장 기록 의무(제18조 제4항)

-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①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②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③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④ 목적 외 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를 관보 또는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등에 게재하여야한다(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 또한, 공공기관은 ①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③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④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⑦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⑧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5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제18조 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 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이에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 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 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 목적, 이용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 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8조 제1항).

4.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법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2호) |
|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5. 질의 응답

- □ 성형외과에서 성형 환자들의 성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병원 홈페이지의 '성형 성공 사례'에 게시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 ⇒ 병원에서 환자의 성형수술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 학교 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문제가 없는지?
- □ 이른바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지만,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음
- □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본 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도 되는지?
- ⇒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됨(예: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따른 절차)
- □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
- □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 □⇒ 병원이 환자관리를 위해 연명부에 내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만, 병원이 안내데스크에 연명부를 펼쳐놓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보주체에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본인 외에 다른 내원자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니,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9조)

1. 개요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 유출 또는 불법유통 등 정보주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 □ 이에,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2. 법령

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주요내용 해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6조 제8항에서 도 본 규정은 제외).

② 법 제18조와의 관계

○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제 공이 금지된다. 법 제18조와 본 규정의 경우 수범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달리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 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제59조, 제60조 등) 등에 비추어, 본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 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문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제공받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한편, 제1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내 이용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집한 정보를 해당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9조 위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 과징금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

①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1. 개요

-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1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유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2. 법령

시

령

고

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 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6 -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해설

□ 파기의무의 발생: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 (목적 달성) 당초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적법처리 근거의 소멸(계약종료, 동의철회, 회원탈퇴 등), 폐업·청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된 범위 안에서 파기의무 발생
- ▶ (처리기간 경과) 동의받은 보유기간 경과, 다른 법률의 보존기간 경과, 별도로 정한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간의 경과로 파기의무 발생
 -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에 대해 파기의 원인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최소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 침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유기간이 일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유기 간을 근거로 파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나, 보유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 처리 목적 달성시)에는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당초 정보주체가 인지하였거나 또는 예측가 능한 개인정보 처리 원인이 소멸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이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모두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어느 시점까지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보주체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한다.
 - 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기초적인 관계(예: 계약,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멸 내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 범위 안에서는 파기의무 가 발생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기간 이 경과한 경우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기한 동의의 철회, 회원 탈퇴 및 정보주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 법인의 소멸과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기업회생)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부 폐업 등 특별한 파기사유가 없는 한 파기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후 그 범위 안에서 파기 필요
- ② (폐업) 일반적으로 폐업은 서비스 종료를 의미하므로 폐업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지만, 폐업 이외의 서비스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③ (법인 해산) 법인 해산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등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파기의무 발생하지만,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④ (청산) 청산사무가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 해산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산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⑤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이 유지되고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므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범위 내에서는 파기의무가 발생

② 파기의 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지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익 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영 제16조 제1항 제1호).
 - 한편,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형태의 개 인정보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의 형태로 파기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1항 제2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의 구체적인 파기의 방법 > -

- ▶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ㆍ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 (예외)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 영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파기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19일 도입된 규정이다.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파기 방법에 추가하였다.
- □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는데, "지체 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관련하여 표준지침 제10조 제1항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파기의무의 예외

-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21조 제1항 단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파기의 예외에 해당 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정보 또한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미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개별적인 목적 범위 내에 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의 종류 | 보존기간 |
|-------------------------------------|---|------|
| 그비기보버 | 국세 부과 제척기간(조세시효) | 10년 |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권 및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5년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기록)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근거법령 | 개인정보의 종류 | 보존기간 |
|-------------------------|--|------|
| 의료법 (진료에 관한 기록) | 처방전 | 2년 |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 |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조산기록부 | 5년 |
|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 투시비미터 충버 |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 3개월 |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12개월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1년 |
| | 전자금융거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에 관한 정보,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상법 | 보험금액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2년 |
| | 상사채권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 5년 |
| | 사채상환청구권 소멸시효 | 10년 |

- □ 기본적인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파기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들을 분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 이는 미파기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혼재되어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 등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의 보관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분리 저장·관 리한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1조).
 - 분리 보관 시 DB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 하는 등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분리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목 적 이외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0조 제3항, 제4항).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 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표준지침 제55조 제3항).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표준지침 제55조 제4항).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
|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법 제75조 제4항 제2호) |

6. 질의 응답

- □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발생 하는 것인지?
 - ➡ 서비스의 중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즉각적으로 파기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서비스의 중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 목적 달성에 이른 수준이라고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기의무가 발생함
- □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바로 소멸하는 것인지?
 -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 더 이상 운용하지 않거나, 법인해산 및 청산/파산절차 종료로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법인격이 소멸"하면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상실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수범의 주체가 됨

4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1. 개요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 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구체 화하고 있다.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종전 법 제39조의3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필수적 동의를 규율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한 적법요건 체계로 일원화하였다. 이와함께,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지 않더라도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또한, 법 제22조의 동의를 받는 방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신설하여 적법한 동의를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 에서 자유로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체화하였다.

<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前

-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적법요건
- (온라인 특례) 필수동의
- (공공•오프라인) 계약 요건 엄격
- →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도 <u>"불가피</u> **하게"** 필요한 때에만 수집 · 이용 가능
- ② 동의를 받는 방법
- 형식, 절차에 관한 규정
- ③ 제재규정
- (온라인 특례) 과징금, 과태료
- (공공•오프라인) 과태료

개정 後

-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적법요건
- (온라인 특례 삭제) 필수동의 폐지
- (공공 오프라인) 계약 요건에서 "불가피하게" 삭제 →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 수집 • 이용 가능
- → ② 동의를 받는 방법
 - 실질적 요건 신설 : "자유로운 의사" 명문화
 - ③ 제재규정 : 일원화
 - 동의받는 방법 위반은 과태료, 적법한 동의 등 적법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과징금
 - 과징금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금지 신설(§76) → 중복 제재 제한

2. 법령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2023. 3. 14.>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2023. 3. 1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

시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 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 시

-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주요 내용

① 의의 및 체계

- 법 제22조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법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그 밖에도 제5항에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및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개 인정보 처리 동의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시행령 제17조는 제1항에서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사항을 전달하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주체가 꼭 알고 동의하도록 사전에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

법 제22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제17조에서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 >

- 1.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1. 명시적인 동의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특히,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조문에서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에는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 등 정보주체 의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동 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판례1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적법한 동의의 요건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하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통틀어 '법정 고지사항'이라한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행하여질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갑 회사가 이벤트 화면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 것은 법정 고지사항을 미리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게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고 화면 하단에 법정 고지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문구 자체만으로는 수집・제공의 대상이 '개인정보'이고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회사라는 점을 쉽고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용자가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만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이벤트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6. 6. 28.선고 2014두2638판결).

판례2 A사 1mm 고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사건

이 사건 경품행사는 △△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중략)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 동의]라는 제목 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 자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R, S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 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중략)… 더욱이 이 사건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선고 2017노1296판결, 대법원 2019. 7. 25.선고 2018도13694 판결로 확정).

③ 중요한 내용의 표시방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을 때에는 다음 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실질 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요한 내용(영 제17조제3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 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 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④ 동의와 다른 적법근거의 구분 및 공개 (제3항)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정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보호 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당 적법근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로 나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후자에 관 한 사항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처리 에 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개 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받지 않기 위함이다.

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

○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법 제18조제2항제1호), 홍보·판매권유를 위한 동의(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제16조제3항).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형식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동의가 강요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를 둔 거부는 가능하다.

참고 합리적 사유의 사례

- · 계열사 고객정보DB를 통합하면서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나,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5년간 무료 장기 주차권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 ·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용카드 발급 또는 쇼핑몰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 나, 광고메일 수신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최소수집 원칙 위반이 나 회원제로 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위법 이 아니다(인터넷뱅킹 등).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제1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전에도 판례를 통해 적용해 온 조건이나 시행령에 동의의 조건 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 자체의 이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지 않는 일부 부가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제75조 제4항 제3호) |

6. 질의 응답

- □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됨. 정보주체의 자유 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함
 - ⇒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에 해당하여 동의가 필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현재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운영 중인데, 선택동의 는 현재처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 선택동의는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
 에 의해 수집・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선택동의를 유지할 수 있음

다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항과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함

- □ 현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내용에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동의를 받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 □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의 신뢰에 기반하여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계약 이행 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유로 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그 동안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필수적으로 동 의를 받아 온 경우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 ⇒ 필수동의 내용에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의내용에서 제외한 후,
 -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함
 - □ 다만, 현장에서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필수 동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정보주체도 이러한 관행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안내하는 방안 도 고려될 수 있음
 - ※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 종전 필수동의 관행 → 정보주체에게 '고지(안내)' 가능
- □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보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이용계약·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보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음
- □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외에 "제3자 제공"할 때에 도 구분하여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택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 □ 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하려는 때에는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 ➡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
 - ※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예측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영 제14조 의2)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이제는 서면 동의 시 글씨 크기가 9포인트보다 작아도 되는지?
 - ⇒ 해당 규정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규정은 삭제 되었으나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 다라서,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글씨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 하는 등 정 보주체를 기만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됨
-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필수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별도로 필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법 §23, §24)
 - □ 다만,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동의를 별도로 받아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헬스장에서 출입 솔루션으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헬스장 이용자의 얼굴정 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적법근거를 갖추어야 하는지?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23조제1항 제1호)
 - □ 서비스의 특성상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게 연계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리고 별도로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 다만, 해당 민감정보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 경우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출입카드, 비밀번호, 대면확인을 통한 수기명부 작성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

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안내

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수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해당 내용을 고지한 것에 그침
- → 서비스 이용과 연계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수 있음
 - ※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특성,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 필요

< 사례 >

- ·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상품 주문을 받아 결제-배송-AS 등 계약 이행을 위해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회의 참석 전문가 등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 계좌정보,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수당 지급에 이용하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동의 원칙 준수"

-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하여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 적법 수집·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

- · 쇼핑몰 사업자가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외에 계약과 관계 없는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의 결혼여부,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 병원에서 온라인 진료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진료계약과 관계 없는 임상실험 등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③ 계약 관련 개인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분리 조치"

- ☞ 필수동의를 받아 온 동의내용에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해당 항목은 삭제하고, 그 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

< 사례 >

- ·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상품구매-결제-배송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에 계약내용과 관계 없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면
- → 계약 관련 동의내용은 삭제(동의 불필요)하고 그 외 개인정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선택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

④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서비스에 불가피한 경우 필수동의 가능"

- ☞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제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 →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별도로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 서비스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별도 동의 필요

< 사례 > 서비스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 ·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급 업무를 위해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 · 렌트카업체에서 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위해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

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1. 개요

- 14세 미만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정보주체로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규정에 분산되어 있 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도록 일원화 하였다.

< 2023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정사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제5조제3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법 제22조의2 제1항·제3항)
-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종전 일반규정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 규정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함(법 제64조의2 제1항제2호)
-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혜 대한 형벌규정은 유지하고 동의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은 삭제함(법 제71조제3호)

2. 법령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 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 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① 아동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영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 아동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중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다.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 (「민법」 제931조에서 제936조까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 령

2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 하였는지 여부를 다음의 어느 하 나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영 제17조의2 제1항 각호)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 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2항, 영 제17조의2 제2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13조 제1항).
- 또한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으로부터 이 를 수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13조 제2항).

④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의 고지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더라도 정보주체인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법 제22조의2 제3항)
-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⑤ 아동의 연령 확인

-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 반드시 연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 서비스의 내용과 전 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령 정보를 확인하여 14세 미만 아동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참고 연령 정보 확인이 필요한 아동 대상 서비스 유형 (예시)

아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령 정보를 수집 하여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청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앱·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델·캐릭터 등이 아동 지향적인 경우
- · 대다수의 아동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 서비스(SNS, 메신저, 게임, 포털, 학습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참조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2쪽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그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14 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방법 등의 특례규정이 모든 개인 정보처리자로 확대되었다.
 - 따라서 기존 온라인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기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공공기관·오프라인 사업자 등기존에 일반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아동에 대한 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22조의2제1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2호)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제22조의2제1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3호) |

②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1. 개요

- □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 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법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 □ 2023년 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 스스로가 입력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 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 개로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2. 법령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 3의2. (생략)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법률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시행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3. 주요 내용

① 민감정보의 정의

- 이 법에서 민감정보란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 * ①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②「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③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④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1.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 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 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 노동조합비 또는 정당 회비 납입내역 등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 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혈액형은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고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예시

- · 발달장애인 성명, 주소(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8-293호)
- ·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3-211호)
-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치매질환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보호위원 회 결정 제2019-21-334호)
- · 2~3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헌법재판소2018. 8. 30. 선고2014헌마368결정)
-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가 포함된 지원사업 관련 자료(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2-353호)
- · 등록장애인 코로나19 감염 등 관련 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7-015호)

5.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를 상황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 시행령 제18조에서는 ^①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②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 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 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③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 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 해 생성한 정보, ^④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민감정보>

-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 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영 제18조 제3호)
- 얼굴, 지문, 홍채, 필적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 확인이나 인증 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 징을 추출하는 기술로 가공한 정보를 말함
- •예를 들어, 사진, 안면 영상 등은 그 자체로는 민감정보가 아니며,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해 특징 정보를 생성한 경우에 해당 특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안면인식을 통해 연령·성별을 추정하여 유형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인식하여 스티커, 특수 효과 등을 적용하는 카메라 앱(App)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진, 안면영상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시행령에 따른 민감정보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 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 ㆍ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②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 제1항 본문과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민 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법정 고지사 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동의를 받는 방법을 준수해야 하다.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법 정서식에서 민감정보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사례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제21조제2항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법시행령」제6조제1항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 2. 가족 및 교우관계
- 3.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 4. 학력·경력
-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 6. 병역관계
- 7. 출소예정일
-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 「병역법」제11조의2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제15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 각 호, 제18조제2항 각 호 등의 규정에 따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이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영 제30조 외에도 영 제30조의 2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등을 알려야 할 의무

- 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 개로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지 않을 경우 '비 공개로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

- 공개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 자체가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공개 게시판 등에 스스로 입력 하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개인 정보처리자가 그 서비스의 표면적인 형태 자체를 통해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를 다시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이를 알려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위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에는 경고창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3). 정보주체가 찾기 어려운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비공개 선택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온라인 지도앱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한 폴더가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성생활, 건강 등 민감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
- · 혈당관리 앱, 체성분검사 기록 앱 등 개인의 건강기록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서비스 중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 운동 앱 내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운동 행위와 연동된 신체적, 생리적 변화 정보(체지방지수, 근육량 지수, 칼로리 소모량, 심박수 등)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 ·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하는 민감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 · 회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의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를 회원 이외의 다른 제3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공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정보주체가 공 개를 원할 경우 스스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 (제23조제1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4호)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3호) |
|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2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5호) |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23조제3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6호) |

6. 질의 응답

-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도 민감정보 에 해당하는지?
- □ 법과 시행령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민족정보, 생체인식정보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 법 제23조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관계는?
- □ 법 제23조는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일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제15조, 제 17조, 제18조 등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 규정에 따른 적법처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

1. 개요

- □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 또한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 는데, 개정법은 조사 대상기관·조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유사한 점 검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경우 정기조사 에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법령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 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 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법률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시행 는 제외한다.
-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 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⑥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3. 주요 내용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즉,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전면허 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법 제24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각 호).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금지 및 예외적 허용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법 제24조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 는 것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법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단순히 신원확인 의무나 연령확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것으로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원·연령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 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의 정기적 조사

- 보호위원회는 ^①1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②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③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영 제21조 제2항, 제3항).
- 다만, 해당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영 제21조 제4항)
- 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영 제21조 제5항, 제6항)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4,3.15, 시행) >

- ☞ (개정이유)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매 2년마다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조사·점검과 점검항목이 중복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개선 필요성이 증가
 - * 각급학교(초중고), 소규모 기관 등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건수가 극히 적은 경우 등
- •이에, 조사 대상기관·조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유사한 점검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안 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경우 정기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사 의 실효성을 확보
- ☞ (**조사대상 및 주기 조정)** 조사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조정함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주기를 기존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 ☞ (중복조사 조정)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에 준하는 조사·점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조사 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실시하여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조사 대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점검 결과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
- □ 2023년 법 개정으로 법 제24조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 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 따라서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
| (제24조제1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4호) |
|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제24조제1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5호) |
|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5호) |

6. 질의 응답

- □ 1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만 정기조사의 대상인지?
-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공공기관 외의 자라도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정기조사의 대상임
- □ 시행령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의미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④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법 제24조의2)

1. 개요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 제24조의2 제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24조의2제 1항에 따른다.

2. 법령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 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 하는 경우

- 법률|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시행

-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란, 규정에서 개인정 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는 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정보주체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상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 '급박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보호가 급박해야 한다. 즉, 지금 당장 그러한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한 상태 여야 하고, 그러한 이익이 침해될 만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는 없다.
 -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 예컨대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과 재산상 손해가 충돌하는 경우라면 생명・신체의 이익이 더 우월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명백히'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이러한 이익의 보호가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생명·신체·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이러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명백히'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 장·보유하는 등 처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 정보주체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때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어떤 법적근거에 따 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 제2항, 영 제21조의2 제1항).
-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주민등록번호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 제3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계획의 수립,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있다(법 제24조의2 제4항).

사례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해석 사례(보호위원회)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을 위한 실명확인'에 신분증 진위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로 인정
- · 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경찰청에 신분증 정보를 전송 시, 이동통신사가 중간 개입이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 병원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병원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법 제24조의2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었다.
 - 따라서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 (24조의2제1항 위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
|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과징금 (제64조의2제1항제4호) |
|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 (24조의2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제75조제2항제7호) |
|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조의2제2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8호) |
| 포함)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 |
| 제공하지 아니한 자 (24조의2제3항 위반,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9호) |

6. 질의 응답

- □ 내부망에 저장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영향평가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지?
 - ⇒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관계없이 암호화하여야 함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 □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됨

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6조)

1. 개요

-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 분야에서도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업무위탁은 현대사회의 분업화·전문화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런 경영방식의 하나 이나 대부분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도 함께 위탁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재유통되거 나 남용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수탁자에 대한 교육, 감독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위탁자가 재위탁된 사 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가 곤란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와 위탁자,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주 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도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 이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종전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월)를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 통합 정비

··· < 2023년 법 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 ·(수탁자 범위 명시)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하고, 개인정보 처 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함
 - → 재위탁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위탁자 동의 신설)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수탁자 준용규정 정비) 준용 제외(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8조의6), 준용 추가(제22조의2, 제25조의2,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30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7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의2)
- ·(수탁자 제재규정 신설) 규정의 성질상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규정은 개별 제재규정*에 수탁자도 포함됨을 명시함 → 정보주체와 위탁자,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도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 도록 개정
 - * 제64조의2(과징금)·제71조(벌칙)부터 제73조(벌칙)까지, 제76조(과태료)

2. 법령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시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 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 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 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3.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개념

1.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업・기관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의 위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때의 전송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음
 -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의미
- · 전자처방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그 서비스 이용자인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함에 있어서 해당 플랫폼이 중계를 위하여 처방 정보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 리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도139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544 판결)

2. 위탁자와 수탁자

- '위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미하고, '수탁 자'는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다.
- 수탁자의 범위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법 제26조제2항)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1차 위탁을 받은 수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자도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3.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판단 기준

가. 위탁의 판단 기준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를 의미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때의 '이익'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결과로써 얻는 업무상의 이익(이하 '개인정보 처리 이익')을 뜻하고, 그 러한 이익을 얻는 자는 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 또한 부담할 지위에 있게 된다. 여기서의 책임이란 개인정보 처리 근 거가 된 법률관계(예: 계약 등)에 의한 책임, 손해배상책임,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 체의 권리행사에 응할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 처리위탁은 위탁자가 정보주체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반 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자의 책임하에 수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내부관계이고,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주체는 여전히 위탁자이며 정보주체와의 법 률관계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3자 제공과의 구분

판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유사한 점이 존재하나 개인정보의 이전 목적과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법률적 관계도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 이익과 책임이 제공하는 자에서 제공받는 자에게로 이전되며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주체 또한 변동되므로, 이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요건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 처리 이익은 단순 경제적 이익과는 다르며, 수탁자가 위탁자로 부터 위탁사무 처리 대가를 수령하거나 또는 기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위탁자만 정보주체와 법률관계를 맺고 수탁자가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반 면,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정보주체와 법률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이익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자칫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때 위탁자는 수탁 자에게 이전한 개인정보가 수탁자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통제하 는 것이 필요하다.

Tip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업무수행 성과가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하 '갑')과 B기업(이하 '을')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포함하는 계약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을'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주로 '갑'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을'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고 보이는 경우, 즉 '을'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갑'의 이름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갑'보다는 '을'의 업무 영역으로 이해되고 그 업무 성과가 '을'에게 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

| 구분 | 업무위탁 | 제3자 제공 |
|--------------|---|--------------------------|
| 관련 조항 | · 제26조 | · 제17조 |
| 이전 목적 |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 | ·제3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 |
| 이선 방법 | ·홈페이지에 위탁 내용과 수탁자 공개 ※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의 경우는 개별 고지 | ·원칙 : 정보주체의 동의 등 |
| 관리·감독 의무(책임) | · 위탁자 책임 (내부관계) | ·제공받는 자 책임 |
|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 | ·위탁자 부담 (사용자 책임) | ·제공받는 자 부담 |
| 예시 |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 · 사업제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제공 등 |

| 참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사리 | 4 |
|--|--|
| 위탁자 | 수탁자 |
| ①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려는 (가)기업 | ① (가)기업과 계약을 맺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 받은 A 컨설팅 회사 |
| ②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나)공공기관 | ② (나)공공기관의 사이트 관리를 수행하는 B업체 |
| ③ 인사 관련 문서를 파기하려는 (다)기업 | ③ (다)기업의 인사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 고용 된 C파쇄업체 |
| ④ 기업 공식 SNS의 활성화를 위해 D마케팅업 체와 계약한 (라)기업 | ④ (라)기업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고 객의 성향을 고려한 친구 맺기 독려 캠페인 을 진행하는 D마케팅 업체 |
| ⑤ 등록금을 은행을 통해 대리 수납하는 (마)대학 | ⑤ (마)대학으로부터 재학생 정보를 받아 등록 금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E은행 |
| ⑥ 전국에 약 천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배달음식을 파는 (바)본사 | ⑥ (바)본사의 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배달주문을 처리하는 F가맹점 |
| ⑦ 도서 대출 반납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 시립도서관 | ⑦ (사)시립도서관 대출반납 처리기기를 유지보 수 하는 G업체 |
| ⑧ 파본도서를 교환해 주려는 (아)서점 | ⑧ (아)서점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도 서를 새로 배송하는 H출판사 |
| ⑨ 역내 보안 CCTV 관제센터를 설립·운영 중인 (자)자치구 | ⑨ (자)자치구의 보안 CCTV 관제센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I보안업체 |
| ⑩ 채권추심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려는 (차)기업 | ⑩ (차)기업으로부터 채무자 정보를 받아 추심 업무를 하는 J채권회수전문기관 |
| ①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위해 교육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은 (카)기업 | ① (카)기업으로부터 직원의 이름, 사번, 휴대폰 번호를 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K교육업체 |
| ②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업무 일부를 N공 공기관에 위탁하는 (타)공공기관 | ⑫ 협약에 따라 (타)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를 전송받아 처리하는 L공공기관 |

2 단계별 검토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단계 (요약) >

| 세부 내용 |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선정 |
| 개인정보 위탁 문서 작성 |
|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 및 수탁자의 개인 정보 처리 |
| 수탁자의 개인정보의 파기·반환 및 위탁자의 파기 등 확인 |
| |

1. 위탁 전 검토 사항

가. 위탁 여부 및 범위의 결정

- 위탁자는 자신의 업무 중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를 선정하기 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 업무의 위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범위, 규모, 위탁하고 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 위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야함

나. 수탁자 선정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역량, 규모, 전체적인 보호조치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 표준지침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6조)
- 이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선정 단계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점검지표 등과 같은 내부 기준을 통한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위탁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탁자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문서에 의한 위탁

○ 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탁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제26 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 포함 사항 > -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법 §26①(1))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법 §26①(2))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영 §28①(1))
-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영 §28①(2))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영 §28①(3))
-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영 §28①(4))
-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영 §28①(5))
- 이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는 문서화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업무의 내용이 수탁 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 경우 약관을 통한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위·수탁 문서는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므로 기업 간 협약서, 개인정보보호 약정서 등 다양한 문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는 위탁 업무의 실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이 갱신되거나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문서의 내용을 재검토한 후 수정해야 한다.

참고 위탁 계약 문서 작성 시 고려사항

- ·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수탁 문서에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위탁자의 동의는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책임 하에 마련한 동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성격,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위탁자의 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위탁계약 문서에 재위탁의 범위와 조건, 사후 통지 및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약정하고 수탁자가 재위탁한 후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함

2. 위탁 업무 수행 중 검토 사항

[위탁자]

가.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공개

- 위탁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탁받은 제3자(이하 '재수탁자')가 누구인지와 그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이 공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수 있다.
 - * (예시) 위탁자가 수탁자(1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추가를 통해 재수탁자(2차)의 위탁업무 내용(재수탁자,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릴 수 있음

< 공개의 방법 (영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

- ▶ (원칙)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 (예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
 - ^①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②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 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③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지

-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탁자가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8조제5항)

○ 통지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는 정보주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지칭하고, 따라서그 내용을 알리는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객 선호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위탁과 같은 경우는 위 통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

1) 교육 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해야 한다. 수탁자에는 다시 위탁받은 자 (재수탁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위탁자는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수탁자에 대하여도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할 수 있음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방법 및 횟수 등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개인정보 위험, 위·수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수탁자에 대한 교육은 위탁 업무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 기간 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 방법(예시) >

o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위탁자가 법 제26조제4항과 영 제28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를 대상으로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구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은 별도로 교육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 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사전협의를 거쳐 수탁자가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 외부 전문교육기 관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수탁자 소속 직원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위탁자는 교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수탁자로부터 교육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만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탁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수탁 자에 대한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수탁자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문서에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탁자가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수탁자가 관련 직원에 대하여 교육 사항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o 위탁자의 전문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이행 방법

- 전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전문 수탁자의 경우에는 많은 위탁자로부터 교육 실시 요청이 있게 될 수 있다. 이 때 전문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요청하는 교육을 모두 이행하는 대신 관련 교육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위탁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위탁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전문 수탁자에 의한 교육 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관리·감독 의무

-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준 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 위탁 유형, 업무 위탁 성격, 개인정보의 보유량, 개인정보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한 점검 지표를 작성하여 정기 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수행하여 개인정보 위험 요인을 체계적·지속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수준은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특성, 위탁자가 수탁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 결과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 방문 확인, 점검 도구 배포, 원격 점검, 정기적 보고,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 대행, 개인정 보 관리 지원 등 합리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한편, 전문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민관협력 자율규제*에 따른 주기적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점검 및 개선 결과 등을 사전에 체결한 위탁 계약 문서에서 약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수의 위탁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따라 셀러툴 분야, 구인·구직(HR)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수탁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약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예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이행 방법

① 위탁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는 자체 관리·감독 계획^{*}을 세워 수탁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위-수탁자 간 개인정보 전송량 및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량 등을 기준으로 수탁자의 개인정보 위험성을 등급화한 뒤 현장 점검, 원격 점검 등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감독을 시행할 수 있음

* (예시) 사전평가 → 수탁자 분류(등급화) → 체크리스트를 통한 수탁자 자체 점검 → 수탁자 이행계획서 제출 → 위탁자 현장점검 및 원격점검 → 감독 결과 도출 및 사후 조치

② 다수의 위탁자가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전문 수탁자에게 다수의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보관 등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수의 위탁자가 개별적으로 전문 수탁자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i) 전문 수탁자는 미리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민관협력 자율규제(예: HR, 셀러툴 분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을 통해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받고 있다는 사실, (ii)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한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미리 위탁 계약 문서에명시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가 이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전문 수탁자는 인증 등 관리 점검 체계를 사전에 계약 문서에 기재하고 다수의 위탁자와 감독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수탁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과태료, 형벌 등 제재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수탁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으므로, 많은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수탁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 계약 문서에 위탁자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약정하고 다수의 위탁자에게 위탁 계약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이행은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영역에 대하여 사전에 다수의 위탁자들과 협의한 후 전문 기관(관련 협회, 컨설팅 기관 등)의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수탁자]

가. 수탁자에 준용되는 의무규정

- □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수탁자의 법규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관련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한 것이다.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법 제19조, 법 제20조, 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가 통지해야 할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준용규정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신설된 규정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 중 일반규정으로 확대 개편된 규정은 준용 규정 에 추가하였다.

< 2023년 법 개정 : 수탁자 준용규정 변경 >

| 구분 | 관련 규정 |
|-------|---|
| 준용 삭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의 통지), 제28조의6 |
|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 준용 추가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제3장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30조의2(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 한편,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 수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규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 따라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련 규 정이 적용된다.

판례 및 해석례 "준용"의 의미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1)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법제처 2014. 7. 7. 14-0296 해석례)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수탁자에게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법 제64조의2), 형벌(법 제71조부터 제73조), 과태료(법 제76조) 규정의 각 호에서 수탁자에 대하여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도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 위탁받은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금지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 업무와 별개로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예: 자신의 서비스 홍보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 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재위탁이 반복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어 재위탁하는 것을 제한 하되 재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위탁자의 동의 규정은 위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성격, 위탁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업무의 특성상 재위탁 내용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거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계약 문서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이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예시) 위탁계약 문서에 재위탁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간소화된 동의 절차(위탁자에게 사후 승인, 주기적 통지 등)를 정한 후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는 방법 등

3. 위·수탁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종료 후 검토 사항

가. 수탁자의 검토 사항

-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 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라도 위·수탁 문서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별도로 보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나. 위탁자의 검토 사항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던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또는 반환 여부를 확인 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모두 위·수탁 문서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와 관련한 민사상 책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의 위탁은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위탁자에게 귀속 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용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므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한다.
- 「민법」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이므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수탁자와 개인정보처리자 중 어느 누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지더라도 이와 별개로 수탁 자는 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수탁자 자신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이 때 위탁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고, 수탁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임
 - 위탁자가 정보주체에 대해서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의 위탁은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수탁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수탁자에게 준용되는 의무를 수탁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수탁자에 있는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그 책임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된다.

- 종전에는 수탁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과징금·과태료·형벌 적용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범위에서 과징금·과태료·형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 법 제26조제8항 수탁자 준용 규정에 수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과징금(제 64조의2)·형벌(제71~73조)·과태료(제75조) 규정에 개별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규정을 추가함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 과징금 |
|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6조제4항 위반) | (제64조의2제1항제5호) |
|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6조제5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2호) |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위반) | (제75조제2항제12호) |
|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제26조제6항 위반) | (제75조제3항제1호) |
|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위반) | (제75조제4항제4호)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제26조제2항 위반) | (제75조제4항제5호) |

6. 질의 응답

-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
|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음 |
| | 법령에 근거가 있어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위·수탁 문서에 의하여야 하나요? |
| | 합 제15조의 적용이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계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수탁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문서를 작성해야 함 |
| | 수탁자가 다수 있는 경우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제20조에 따른 수집 출처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
| | □ ○ 2023년 법 개정으로 법 제20조의 수집 출처 통지 의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 준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수집 출처는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수집 출처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
| |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지요' |
| | □ 가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님 |
| | |

|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
|--|
| ➡ 플랫폼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에게 있다면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수탁자로 보기 어려움(예 : 행사 안내를 위해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초대장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다만, 위·수탁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약 플랫폼 제공 사업자에 의해 개인정보 분석 등의 처리가 일어나며 이러한 처리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의 지시·감독에 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음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
| |
|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약확인 및 고객 상담업무를 전문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고객 대상 이벤트와 여행상품 홍보 업무도 해당 콜센터에서 모두 진행하려고 한다.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
| ⇒ 본래의 서비스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업무가 아닌 별도의 이벤트,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
|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처리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 □로법」등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탁자인 병원은 정보주체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 대리점 직원(수탁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 본사(위탁자)도 책임이 있는지? |
| □ 위탁자(본사)는 수탁자(대리점)에 대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 |

참고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제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_)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4)
 -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 야 한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 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수탁자(을)

주 소: 주 소: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법 제27조)

1. 개요

-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 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 그 결과 정보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시에는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2. 법령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법률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 보처리자로 본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시행 령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 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 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주요 내용

① 의의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전되면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법 제2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 게 되는 기본 관계(예를 들어 서비스)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영업양도와 같이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의 제3자 제공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이전이 가능하 도록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적용 대상: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

1. 적용 범위

- 법 제27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실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경우(이하 법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형태를 "영업양도등"이라 한다)까지 포함된다.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기본 관계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의 양도·합병 등"의 판단 기준

① 개인정보 DB 등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 <u>개인정보 DB 등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상황</u>을 전제로 <u>영업양도 및 합병을 그에시로 규정</u>하고 있으므로, <u>인적·물적 분할</u>, <u>자산양수도 등의 거래를 통해 사업부문이 이전</u>되는 등 <u>사실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u> 본조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u>이전과 관련하여</u> 본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② 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 이전 (상법상 영업양도)

※ (판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 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u>영업의 동일성 여부</u>는 일반사회 관념에 의하 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u>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u> 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 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2. "영업의 양도・합병 등"의 유형

- ① (영업양도·합병) 상법상 영업양도는 상인이 영리목적으로 결합시킨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두 법 제27조 적용대상이 된다.
- ②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 하고 분할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 제27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이상 분할의 방식(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은 불문하며, 분할과 합병이 함께 이루어지는 분할합병도 동일하다.
 - *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의 경우「상법」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은 승계되는 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되며, 판례 또한 동일하게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 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 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 ③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영업의 출자의 범위에서는 영업양도와 그 외관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법 제27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 현물출자의 경우 영업양도와 그 실질에 있어 유사하다고 보고 상법 제42조 등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6.7.9. 선고 96다13767 판결).
- ④ (자산양수도 거래) 자산양수도가 사업부문 등을 이전하기 위한 거래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영업양도와 그 형태가 다를 뿐 사업부문을 이전한다는 목적이나 적어도 이전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이 영업양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고려하면, 이 경우도 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 다만,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는 거래 자체로 개인정보의 이전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법 제27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 법 제27조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해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명정보·개인영상정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통지만 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③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의무

1. 의무 주체

- 영업양도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차적으로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영업양수자가 통지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사전 통지).
- 만약 영업양도자등이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받은 영업양수자가 통지하여 야 한다(사후 통지).
 - ※ 영업양도자의 사전 통지의무 불이행・영업양수자의 통지의무 불이행(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통지 방법

○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등의 방법 즉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여 야 한다.

------- <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다만,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통지 시기

- 법 제27조는 "이전하는 경우",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이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등 영업의 양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개인정보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공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파기 의무

- "영업양도등"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와 일체로서 서비스 내지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전체서비스를 영업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자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 다만,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만을 양도하는 경우 파기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회원가입 기반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업양도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받는자는 회원이 최초로 가입할 당시에 이용하고자 한 서비스 목적 범위에 포함 되는 서비스(이전 받은 서비스)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5. 제재 규정

| 위반행위 | 제재 내용 |
|-----------------------------------|------------------|
| 영업양도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제75조제4항제6호) |
|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 다녀이쉬이 지여 다느 다치마이 |
| 제공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7조제3항 위반) |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

6. 질의 응답

- □ 영업양도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되는 경우 제27조만이 적용되는 것인 지 또는 제28조의8 또한 적용되는 것인지?
- □ 입법취지·목적을 고려하면 법 제27조가 법 제28조의8의 특례라고 볼 사정이 없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양도·합병의 경우 제28조의8이 배제되지 않아 법 제27조, 법 제28조의8 모두 적용됨. 따라서, 양도 시점에 양도자가 국외 양수자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음
- ▷ 양도 시점에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는 이전하되 계속하여 국내에서 처리하다가 향후 양수자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보관'에 해당(법 §28의8①(3))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①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법 제39조의6 삭제)

1. 개정 개요

- □ 기존 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 (예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 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 발생
- □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만 적용되던 법 제39조의6 파기에 대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21조 일반 파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법령

법 률

시

령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

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3. 개정내용 해설

- □ 법 개정으로 1년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 리 보관해야 하는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만 별도로 부여되던 정보주체의 미이용 기간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의무사항은 없어지게 되며,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일하게 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에 따라 보유기 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 이에 따라, 제39조의6에 따라 분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초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 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 정보처리자는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예시) ${}^{\circ}$ 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1년 → 서비스 특성에 맞는 기간으로 변경(예시: 6개월, 1년, 2년 등 기간을 선택), ${}^{\circ}$ 별도 분리 보관 → 서비스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와 통합 관리하되 휴면고객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 방안 보완 등
- □ 개인정보 휴면정책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 특히 종전 유효기간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파기하 거나 일반회원 데이터베이스(DB)와 통합 관리하려는 사항은 개인정보 정책에 중 요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하여 보관 하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유효기간제 폐지)으로 인해 휴면정책을 변경한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파기 또는 서비스 계속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 유의할 점은, 정책 변경사항 안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홍보·판매 권유 별도 동의), 정보통신망법(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좋은 사례

●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개 정전 제39조의6 삭제)에 따라 **회원 휴면정 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 (변경내용) 휴면으로 분류되었던 회원계정은 00월 00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반회원'으로 전환됩니다.
- · (이의제기 및 문의) 일반회원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회원탈퇴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全0000-0000)로 연락주시면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례

-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휴면정책이 폐지**되어 고객님의 **휴면 상 태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금 홈 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대 50,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 □ 일반회원과 휴면회원 데이터베이스(DB) 통합 정책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당초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내용과 현재의 서비스 내용 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둘째, 홍보를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홍보 목 적 활용 동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따른 수신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약관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 인해야 한다.
 - 셋째, 국세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의 분리 보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3항)는 유효기간제와는 별개의 의무사항이므로 계속하여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넷째,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통합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면상태였던 고객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인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자우편 본인확인 등)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
|---|
|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 |
| 인정보를 현행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
|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5. 제재 규정

□ 해당사항 없음

6. 질의 응답

- □ 분리 보관하던 기존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복원하려는 경우에 정보주 체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 - ※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 동의 관련 내용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7.,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 □ 휴면정책 변경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해도 되는지?